

第11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4月20日(金) 10時32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都市計劃用度地區(美觀地區)變更決定(案) 意見聽取
2. 清進區域 都心再開發 區域變更(案) 意見聽取
3.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都市計劃用度地區(美觀地區)變更決定(案) 意見聽取(鐘路區廳長 提出) 2面
2. 清進區域 都心再開發 區域變更(案) 意見聽取(鐘路區廳長 提出) 2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6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6面

(10時32分 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맞이하는 제110회 임시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의회도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정보화시대에 정보 역량과 지식을 축적 활용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주민복지와 종로발전 위한 감시와 평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정비하여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의원이나 공무원 모두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선배 동

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景良 議事擔當主任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4월 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요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으며 2001년 4월 11일 도시계획 용도지구 도시관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청진 도심재개발 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金景良 議事擔當!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를 하는 순으로 해야 하나 금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일행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준비관계로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를 먼저 한 후 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1. 都市計劃 用度地區(美觀地區) 變更決定(案) 意見聽取(鐘路區廳長 提出)
2. 清進區域 都心再開發 區域變更(案) 意見聽取(鐘路區廳長 提出)

(10時37分)

○委員長 金福同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청진구역 도심재개발 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평소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총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鄭鎮皓 都市計劃課長이 2주간 직무교육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해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 관내 미관지구 중 사직로, 자하문길, 의주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사직로, 자하문길, 의주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제8조에 의거 종전의 제1종과 제2종 미관지구는 중심미관지구로 제3종중 관광지 이외의 지역과 제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제3종중 관광지 및 제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미관지구 재정비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우리 구 사직로, 자하문길, 의주로 일대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서울시 방침이 우리 구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대상지역 노선별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직로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사직로 주변 양측으로 교북동 1-12번지에서 사직동 1-48번지간이며 폭원 12m에 연장은 950m로 면적은 4만 800㎡입니다.

다음은 자하문길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자하문길 주변 양측으로 적선동 107번지에서 청운동 108번지간이며 폭원 20m에 연장은 1,020m로 면적은 4만 800㎡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주로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의주로 주변 편측으로 교북동 1-12번지에서 무악동 산3-9번지간이며 폭원 15m에 연장은 900m로 면적은 1만 3,500㎡입니다. 현재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할 때 나타나는 건축제한 완화효과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역

사문화미관지구일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가 4층이하로 제한받던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게 되면 2층이상으로 완화가 됩니다. 따라서 또한 규제되었던 용도제한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즉 단란주점,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유키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같은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2001년 3월 13일부터 2001년 3월 27일까지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7항 규정에 의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람공고시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진구역 도심재개발 구역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청진동 166번지 일대 청진구역 도심재개발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나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사업이 침체되고 기업 및 자본가들의 투자 의지가 위축되어 있어 대형건물 신축방식의 현행 청진구역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다수 주민들이 1999년 초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및 서울시를 비롯한 각 기관에 재개발구역을 해제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도심부관리기본계획,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등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련 상위계획에서도 역사문화보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종전의 양적인 개발이 지양되고 환경친화적인 질적인 개발이 요구되며,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원의 지구단위 계획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종전의 대형건물 위주의 전면철거 방식보다는 옛모습을 간직한 소단위 적응형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개발 신규 구역지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 여건상 특성유지가 필요한 구역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재개발 청진구역은 주변지역이 대형건물 위주로 개발됨에 따라 옛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

는 중소식당가가 대다수 분포하고 있고 청진동 해장국집 피맛골 등이 위치하고 있어 나름대로 도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특성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대다수 주민들이 전통음식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6지구만을 남기고 기타지구는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구역변경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2001년 3월 30일부터 4월 13일 14일동안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시 13지구 주민 한분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2건의 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의 하시는 일 모두가 만사형통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都市計劃用度地區(美觀地區)變更決定(案) 意見聽取

清進區域 都心再開發 區域變更(案) 意見聽取

(鐘路區廳長)

(이상 2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역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종전의 역

사미관지구는 4층이하까지 건축할 수 없는데 일반미관지구로 지구지정 되었을 때는 몇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丁炳煥委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하한규정만 있고 상한규정은 없습니다. 나머지 변칙 층고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제한사항만 있고 일반미관지구에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丁炳煥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일반미관지구로 되었을 경우에 2층이상으로 지을 수 있고 그러면 몇층까지 지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하한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상한선은 일단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사선에 건축법상의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이라든가 또 만약에 그 주변에 주거지역같은 종별 기준에 따라서 2층 일반주거지역같은 것은 12층 이하 이러한 식으로 건축법상 용도지역이라든지 도로사선에 의한 건축법상의 제한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미관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상한규정은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청진지역의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진동이라면 우리 종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옛모양 건물로 보기가 아주 좋고 어떠한 화재가 발생할 때는 소방도로도 없이 이 지역은 꼭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 소필지 지주들이 개발을 종합적인 개발을 반대하고 수복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을 개발에서 해제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개발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주들이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일단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살펴보면 주민들은 고층으

로 집단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 수익성이라든가 향후 발전에 대해서 다소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진동 일대 지역이 전체적으로 20층이상 고층빌딩으로 되었을 때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더 과연 수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진동 지역의 영업이 잘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 뜻에서는 현재 상태대로 건축같은 것을 좀 유지하면서 현재의 음식점 문화거리로 가꾸어가는 것이 낫겠다 그 다음에 길이 너무 큰 길이 나게 되면 음식점 영업에는 다소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제했을 경우에 일부 난개발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 청진동구역의 형태를 보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청진동길이 지금 8m에서 10m 그 다음에 외곽으로 15m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로폭원에 1.5m밖에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2m, 8m 주변에 위치한 필지는 4, 5층 정도 그렇지 않고 4m도로폭에 대해서는 높이 지으려고 해도 3층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개별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도로폭이 4m가 확보되지 않는 필지들은 건축할 때 중심선에서 후퇴를 해서 양쪽으로 4m를 확보하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조그만 필지를 가진 식당 개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재개발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즉 말하자면 건축할 경우에 소방도로를 과연 뚫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점이고 우리 종로의 먼 장래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이 그래도 중심지에 위치해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도시계획에 걸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물론 난처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의 설명회라도 가져서 먼 장래로 봐서 정말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이 아주 충분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들이 작년부터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가지고 당초에는 위원님들과 같은 그런 논리로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개발이 결국은 지주들의 의사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주들이 반대하고 재개발에 반대를 하면 비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놓더라도 결국은 백년이 가더라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낡은 상태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주민들 의견으로 볼 때는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에는 재개발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게 일단 도시가스가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단 2층으로라도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규제에 묶여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허가가 안나가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낡은 상태로 더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러한 해안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이 어렵다면 우선 차선이라도 택해서 주민의 의사를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한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호텔 11층에서 보면 정말로 종로에 이런 지역이 있는가 전부 루핑집이고 텐트로 아주 보기 흉물스럽거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吳錦南 前 副議長님!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직로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폭원이 12m, 자하문길이 20m, 의주로가 15m입니다. 큰 대로일수록 15m, 12m로 되어 있

고 좁은 길일수록 20m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2m나 15m에 20m 안에 들어있는 도로가의 건축상황과 그걸 벗어났을 때의 건축하는 상황의 건축법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자료에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과로 해서 이번 자하문길 주변의 최고 고도가 12m에서 20m로 나와있는데 현재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에 보면 4층 이하에서 2층이상으로 완화 건축법상 도로사선 높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는 좀 풀어진 것 같은데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하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서 16m에서 20m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으로 풀려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존속이 된 입장에서 이것만 풀어 가지고 하등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2층이상이 완화가 됐다면 이 고도제한이 경북구역 주변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어줘야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2층이상으로 완화된 것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잘못 착각을 하시고 건축법이 풀렸다든지 고도가 풀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吳錦南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별로 폭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폭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할 때에 폭원을 지정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폭원의 변경을 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폭원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입안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도시계획법상에 다른 제한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미관지구를 해제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구청 관할 구역내에는 고도제한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경북궁이라든가 특정지역 이러한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고도제한지구가 많은데 말씀하

신 대로 일반주거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자하문길 주변은 최고고도제한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높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있을 때보다는 일단 층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벌써 20m라면 상당히 6층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는 것보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단순한 건물의 층수에서 보는 혜택도 있지만 그 외에 건물의 용도를 했을 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 용도의 제약이 상당수 해제되기 때문에 층고에서는 별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었을 경우에 건축물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이 돼서 층수 제한이 2층이상으로 완화가 됩시다라는 그 외에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법상의 다른 규제라든가 건축법상의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은 맞춰서 건축을 하셔야 됩니다.

○吳錦南委員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가 또 빠졌습니다. 폭원 20m, 15m 이내에서 건축을 하는 것과 폭원에서 그것을 벗어났을 때 건축하는 것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해주셨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미관지구로 바뀌게 되면 단층 건축은 어렵게 됩니다. 2층이상의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지역과의 차이점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동일한 규정을 받기 때문에 다른 차이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吳錦南委員 폭원 안을 벗어난 안쪽으로 있는 것은 일반건축법상으로 짓고 폭원 안에 드는 것은 지금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데는 거기에 맞는 것으로서 2층이상으로 완화가 된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2층이상으로 건축한다는 것 외에 나머지 사항은 똑같이 건축법이나 기타 도시계획법상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하신 16m에서 20m와 2층이상으로 완화와 이것을 상반되게 오후 2시에 또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상반되게 같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좀더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려서 어느 지역은 16m에서 20m로 묶여지고 어느 지역은 2층이상으로 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에,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청진지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를 하셨는데 13지구의 한분만 이견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한분이나, 그렇지 않은지 않겠습니까? 뭐가 공람공고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공람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지주들에게 100%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반대하는 분이 한분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반대하신 분도 있습니다라는 해제를 요구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미관지구 일대의 100평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이 나오죠? 건축허가가 나오죠? 100평 이하는 건축허가가 안 나오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설계 지역에서 도시설계지구로 묶인 지역에 대해서는 각 동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최소대비 필지를 기준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330㎡를 해놓은 지역도 있고 그보다 작게 최소 필지를 정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다만 100평이 안되는 것은 무조건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李炯述委員長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미관지구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공람공고에 의견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의견을 제시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위원도 미관지구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관지구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만 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후속조치를 안해서 어떻게 다 풀고 규제를 벗어나서 고층빌딩 올라가고 하면 덕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흘러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동경하고 경도나 교토 누가 보든지 교토를 아주 엄청나게 우러러 보고 그 나라의 역사성을 땀니다. 이 서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역사, 문화, 미관 이러한 부분을 사랑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종로가 으뜸 가고 또 지금 현 시점에 와서 고층건물 개발하는 것보다 역사보존에 필요성을 느끼고 이 부분에 지금 서울시 방침도 역사문화미관을 아주 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이러한 시점에 사직로 주변, 자하문길 주변, 의주로 주변에 여기에 역사문화미관지구 부분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어놓으면 설명내용에도 보면 카지노도 하고 목욕탕도 하고 술집도 만들고 이래서 일시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덕은 올는지 모르지만 종로의 600년 자랑하는 이 종로의 역사성으로 봐가지고 과연 잘된 부분인지 지금 21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문화 부분에 아주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아무리 종로에 개발한다 하더라도 신도시에 개발해 가지고 홍청거리는 그러한 재산상의 덕이 안옵니다. 이 본 위원이 복춘 600년 된 핵심의 복춘에 살면서 지금 현재에 새로 집을 지은 부분하고 아주 오목조목하게 집도 못짓고 이러한 여기에 고층 올라가는 부분보다도 낮은 건물이 재산상의 덕이 크게 온다 본 위원은 느끼고 받습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 미국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뉴욕에 갔을 때 20 몇층

짜리 건물이 분해를 안하고 옮겨갔다고 그래요. 그게 몇 년 된 거나 하니까 50년 됐다고 합니다. 50년이라는 역사가 그 건물을 헐치지 않고 그대로 원형대로 옮겨다 놔두고 그걸 아주 크게 자랑하는데 과연 종로는 앞으로 무엇을 자랑할거냐? 그거 잘 가꾸기만 하고 이 고층건물을 짓고 홍청거리는 그런 상가거리보다도 옛날 역사를 잘 가꾸 놓으면 주민들에게 큰 덕이 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예를 제가 깊이 들어가 봤더니 규제를 해가지고 보존을 하면 그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10층, 20층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을 못 올라가기 때문에 2층, 3층에 두고 10층, 20층 못 올라가면 재산상에 더 득을 주도록, 바로 이웃 일본 경도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현재에 많은 사람들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천억이 넘는 돈을 복춘에 투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춘 하나 가지고는 안됩니다. 돈화문 앞으로 해서 인사동 이런 부분, 이 문화권벨트란 것이 한 부분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사직로든지 자하문길 이런 부분 전체를 문화권벨트로 해서 후손들에게 잘 가꾸서 남겨준다고 하면 종로가 지금 현재 할 일이 아니냐? 도시 가꾸기라는 것은 천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당장 눈앞에 있는 적은 것 가지고는 그렇게 후손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局長님 견해는 어떤지 답을 듣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委員長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개발적인 공사가 아니고 역사성이 있는 문화재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개발과 보존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운용하는 것 또한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되는 세 지역은 상당히 대

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인근에 개발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지금 시청의 용역팀에서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써는 좀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워서 주민들에게 그동안 가해왔던 어떤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 라고 그렇게 연구팀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아까 吳鎭南委員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도제한지구로 묶여있는 부분과 조금 모순된 부분도 있고 합시다만 그 부분은 그 차원에서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이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미관지구로 바꾸고자 하는 이 사항은 이 사항대로 추진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李炯述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문화, 전통이 어린 이런 지역에 대한 보존 여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많은 공감을 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많은 공감을 하고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 이 부분에 집행부는 항상 규제만 할 줄 알았지 거기에 있는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 규제를 해나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망가트려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재산상에 너무 손해를 보니까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어서 고층건물을 올려서 더 나은 생활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결국은 이런 안까지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에 과거의 행정을 맡은 책임자는 물론 지나간 사람들이 잘못해서 물러났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집행부가 왜,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고 여기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일반미관지구로 이걸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안이 나올 때까지 집행부는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에 역사문화미관지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을 때 보보다도 지금 역사 잘 가꾸기 차원에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이게 내 재산상으로 득도 되고 생활도 나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그랬을 때는 이런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백년, 천년 후에 집행부가 정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잘 가꾸고 또 새로 개발할 때는 하고 기 지정된 부분을 계속 방치하고 주민들 생활에 해를 주니까 이걸 다시 주민들 생활에 나은 부분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까. 집행부가 과연 지금 이런 안이 흘러가도록 방치를 하고 서울시정개발원에서 용역을 줬더니 당연히 바뀌라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인 종로구청이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해를 주고 여기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내 지역을 묶어 가지고 역사성 있게 종로 여기에 가까운 지역에 문화권벨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지역이 되면서 내 재산도 일반미관지구 바뀌었을 때보다도 묶어 가지고 집행부가 유도를 해나가면 백년, 천년 후에 역시 오늘의 종로구청을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가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볼거리를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개발을 아무리 해봐야 일본 동경을 아무리 자랑해 봐야 상업성으로 끝나지 역사에 빛나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오직 가꿀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경복궁과 비원과 덕수궁이 여기 있기 때문에, 5대 궁이 바로 이 둘레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기 되어있는 것도 전부 바뀌어 가지고 상업화를 시켜서 그게 잘 되면 좋지만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일부분은 뒤에 허물어지고 역사문화미관도 흐트러지고 그게 주민들한테 크게 득도 안되고 이걸 계속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정말 백년, 천년 내다보면서 역사가꾸기에 앞장선다면 주민들이 내 재산에 더 득이 온다면 이런 일은 시작을 안 한다고 할텐데 局長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 따끔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종로구청의 공무원이자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공무원이고 큰 틀에서는 정부 공무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

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대부분이. 거의 100%가 결정권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자주 변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정책 방향 여기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대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 차원에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은 많이 했지만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나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도제한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서를 수 차례 만들어서 청장님께서 직접 청와대에 전달한 바도 있고 서울시에도 수 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건의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다가 어떤 도시계획의 흐름이나 정책이 변화가 되는 시점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공감을 하고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李炯述委員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이 부분은 서울 시정개발원을 거쳐서 우리 종로구에다 시달된 사항이니까 아마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따라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으로서 이것이 여기 이렇게 오기까지 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재산상에 득이 오는 일을 왜 안 했느냐? 했으면 이런 일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 부분 말고 종로관내에 4종미관지구, 지금 현재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여기에 속해있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상에 득을 줄 수 있고 거기 사는 것을 나는 이렇게 스스로 역사가꾸기에 동참하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재산상에 득도 되고 후손들에게 아주 내가 잘 했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집행부인 종로구청

은 중앙정부에 힘이 들더라도 건의를 해서 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이런 부분에 충분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 노력을 하면 종로가꾸기 하는 데에 후손들에게 욕을 좀 덜 먹지 않나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담당국장께서는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의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에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두번 다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나는 2층 이상 내가 건물을 지어서 득을 본다라기 보다는 내가 역사가꾸기에 참여함으로써 인해서 재산상에 득이 더 올 수 있다고 보면 이와 같은 일은 두번 다시 안 하리라 보고 담당국장이 이런 안건이 본 위원회에 상정 안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李炯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安載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李炯述委員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 답변 중에 보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정말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권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와 협력을 하면 적어도 물론 거기에는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李炯述委員님께서도 기본적으로 하신 말씀은 제가 듣기는 이렇게 들었어요. 종로구가 안고 있는 오래된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은 자치구 스스로가 입안을 해서 그게 주민들과 밀접한 재산권의 규제나 또는 행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니까 자치구가 그야말로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간다면 의회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종로구 재무건설 위원회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던 소위 지금은 자연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만 풍치지구에 관한 건폐율 조정문제를 의회에서 한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

있고 특히 의회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한 사람도 거기에 나와서 해준 사람이 없어요. 특히 하국장도 담당과장을 한번 보냈다가 그 다음에는 두번 세번 짜는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 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미관지구의 변경결정이나 청진구역도심재개발구역변경(안)에 대해서 종로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 도시 계획은 어차피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어차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도시계획과 인원이 없다면 그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정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들이 정말 오래된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말 아름다운 고도를 가꿀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당부드리면서 청진지구와 관련지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6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거의 해제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최초로 몇 개의 지구로 청진지구가 시작됐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79년도에 구역이 지정되고 '81년도에 사업이 결정될 당시에는 9개였다가 9개가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97년도에 19개 지구로 분할이 됐습니다. 현재는 19개 지구입니다.

○**安載弘委員** 19개 지구가 주민에 의해서 자꾸 폐지되는 이유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해서가 주요 이유로 되어 있고 지금 남아있는 지구가 6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용역비용과 관련해서 예산의 낭비만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아마 작년에 지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도면에서도 보면 6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그러면 지금 재개발계획사업이 지금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있는데 6지구만 이렇게 남겨두면 저 6지구가 SK빌딩 건너편에 무과수제과 뒷쪽인 것 같은데 그럼 거기만 개발하게 된다면 지금 개발계획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몇 층에 몇 개동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20층에 1개 동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지금 필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총 면적이 9,635㎡입니다. 그 중에서 택지면적이 6,783㎡, 그 다음 공공시설이 2,852㎡입니다.

○**安載弘委員** 그럼 6지구 개발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개발이익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최초로 현대차에서 그쪽 부동산신탁을 통해 가지고 대리인 2명을 세워서 토지를 집중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차에서 사옥을 짓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었는데 현대 차는 강남과 여의도에 사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되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정확히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구역변경결정을 봤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변경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재산권 행사, 행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을 같이 해제하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安載弘委員** 사업이 모든 구획결정이나 구역결정이 나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간에서 하는데 또 는 관련된 법규에 적합하다면 이상은 없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청진지구가 거의 다 해결되고 6지구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쪽 제일은행 건물을 제외하고 교보빌딩을 제외하고 청진지구에는 높은 빌딩이 거의 없더라도요 보니까. 그러면 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우뚝 솟아오른단 말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아까 局長께서 제안설명에서 얘기한 대로 그 지역이 역사적인 거리인 피맛골도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대형건물 위주로 개발되기도는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작은 식당가를 육성해서 개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저희들도 바람직한 방향은 현재 제일은행 건물에 있고 여기 6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현재 맞은편 쪽으로는 거의 다 고층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 형평성으로 보면 고층으로 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앞 부분에서 고층이 들어서서 빌딩숲이 쳐지면 가급적이면 뒷부분도 음식점권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이쪽에서 배후상권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음식, 먹거리상권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개인이 짓는 아니면 나중에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개발의사가 확실화 된다면 주민들이 이제는 개별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한다 하더라도 별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쪽은 택지가 좀 큼니다. 그래서 이쪽은 결국은 빌딩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개인에게 맡기든 민간에게 맡기든 간에 추후에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쪽은 큰 건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 건물은 배후상권으로 들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安載弘委員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 약 5년 이내에 실행이 돼서 완료가 됐다고 볼 때 5년 이후에는 그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다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또 그 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 민간인들의 자본투자로서 인해서 또 다시 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종로구 자체에서는 청진지구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이 서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시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는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료됐을 즈음에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고 도시가 개발이 되고 공동화가 되고 또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지저분한 건물이 남아있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6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는 나머지 문제가 대두됐다고 하면 종로구에서도 용

역을 들여 가지고 그 예산을 얻어서 청진지구가 최초로 용역을 들어서 이러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향후 10년이나 15년 후에 청진구역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하는 종로구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6지구 단독으로 남아있는 건 조금 전에 20층 건물 한 동으로 계획이 간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만큼 개발 계획이 되어 있어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安載弘委員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60일입니다.

○安載弘委員 사실 공람·공고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역사미관지구와 관련해서 공람·공고를 3월 13일에서 27일까지 공람·공고를 했는데 도시관리국에서는 이것을 재무건설위원회에다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람·공고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면 도시관리국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이리이러한 내용의 공람·공고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하는 정보의 제공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진지구와 관련지어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는데 이것 역시 어떠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종로구의 도시계획은 심의를 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이러한 자리가 사전에 없이 오늘 당장 와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이 결정된다 하는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필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준비하자마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마지막으로 어차피 우리 젊은 엘리트 직원인 하국장께서 종로구의 모든 도시계획

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우리 직원들, 특히 도시계획과, 주택과, 녹지과, 건축과 직원 모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종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들이에요. 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건축의 허가, 녹지공간의 조성 등 이러한 것들이 도시관리국 소속의 과장님들 책무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인허가를 해주실 때에는 좀 냉정하게, 과연 내가 종로에 있다가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종로구에 있을 때는 종로의 미래를 보고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노라고 정말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재차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실 때 제반적인 모든 여건을 폭넓게 고려하시고 다양한 정보를 수렴해서 가지고 정말 미래에 아름다운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洪承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洪承台委員입니다. 청진지역에 대해서 4~5년에 부구청장이 이 청진지구를 파라다이스식으로 지하로 청진 골목을 만들면서 꿈의 파라다이스 설계를 컨설팅해 가지고 복도 올라오는 데마다 컨설팅해서 만들 설계를 좌악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심성 홍보죠. 되지도 않는 거. 그 당시에 주민들이 거의 반대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진 안 된다. 이진 파라다이스 꿈을 깨라.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냥 집행해 나간 거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6지구를 위한 하나의 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지구를 일단 만들어놨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구세만 많이 낭비했죠. 되지도 않는 걸. 그때 어떤 목적하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는 앞으로 명심해서 하시고 정말 그때 당시에 익선동 재개발지역은 꼭 해야 할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화문에서 내려오는 거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종로에 저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느냐 하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지역은 정말 재개발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용적률 1200%에다 20층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낙원동 일부분이 무리가 와 가지고 딱 잘라버렸어요. 작년. 거기 몇 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의장일 때 의장실로 와서 싸움도 하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당신네가 잘라 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잘라서 반으로 익선재개발지역으로 했어요. 그런데 1200 용적율도 안되고 20층도 안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건고싶은 돈화문 거리를 만드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와서 보는 지역입니다. 이 도심 재개발지역이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걸맞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하세요. 거기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청진동처럼 이러한 잘못된 역할을 하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福同** 委員長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洪承台委員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익선구역 재개발이라고 해서 반대가 엄청 많았는데 구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하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답변드리겠습니다. 洪承台委員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청진재개발구역과 그 다음에 익선재개발구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선구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선구역은 洪承台委員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을 독려해주신 그런 덕분에 상당히 주민들과 또 서울시 자문위원간에 상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왔는데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익선재개발구역은 잘 풀려져 나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청진구역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당초의 계획이 바뀌게 돼서 위

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모든 정책 방향이나 또 사회 흐름이 개발쪽으로 쪽 개발쪽으로 나가는 그런 분위 기였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모델이 시범적으로 시행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고 또 IMF를 맞고 하면서 개발 열기가 식고 상당히 상황이 바뀌게 돼서 결과적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게 사전에 분석을 하고 준비해서 중도에 계획이 변경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洪承台委員** 답변에 잠깐, 동료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안건이 아닌 것을 질의를 하게 돼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청진동꼴이 안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익선동에 대한 답변이 주민들이 거의 OK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몇사람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낙원동쪽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언제나 경제지역으로 언제나 현재보다 이익이 되어야 하지 이익이 안되면 하겠습니까? 이익이 되느냐, 이것을 갖다 첫번에 봤을 때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낙원동쪽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세밀하게 해서 그래서 안될 경우에는 빨리 다른 방법으로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 되지도 않는 것을 갖고 집행부에서 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구를 좀 다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洪承台委員** 몇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委員長 金福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도시계획 정책안이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악동 의주로변이 '97년도에 상세계획지구 지정이 되어 가지

고 아마 2000년도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로 해제됐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았을 때 그것이 해제되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해제되어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오늘 역사문화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도시계획확인원 작업이 언제부터 수정이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오늘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은 다음에 서울시에 상정을 하게 되면 역시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상정해서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시장 결재를 받아서 고시하게 됩니다. 그 고시가 끝나게 되면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진행된 절차를 보게 되면 그래도 몇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하루에 심의할 수 있는 건이 15건이상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구에서 상정된 안건이 많고 서울시 의회도 그렇게 자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통상 5, 6개월 잡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상세지역으로 해제되었으니 '79년도인가 아마 4종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건축할 때 일반지구로 변경을 빨리 시켜달라고 했더니 해제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은 빨리 해제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해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혼선이 있어서 안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 오늘 만약에 의견청취를 하셔서 서울시에 올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즉 말하자면 공부상의 모든 것을 해제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安載弘幹事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루하시더라도 인내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임시조치법이 발표돼서 서울시에서도 종로구 관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서 해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에 해당되는 허용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부암동 일대입니다. 부암동사무소 뒤편으로 지금 정확한 면적은 죄송합니다마는 면적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만㎡ 정도 되는

○安載弘委員 지금 해제가 됐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해제결정은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그런 절차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의원으로서 재무건설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나요? 어느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비밀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바로 드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시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좀 주시고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河局長께서는 정말 종로구의 으뜸가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신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서 능동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소관 부서가 재무건설위원회니까 이러한 위원님들이나 위

원장이나 간사한테 그러한 정보를 주신다면 위원님들도 보다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정보를 갖는다면 지역에서 활동하시기도 좋을 거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는 좀 미리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사소한 사항이라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즉시즉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이 2건입니다. 오전에 다 마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므로.

(○朴鍾植委員 議席에서 - 다 마쳐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李憲九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憲九委員 李憲九委員입니다. 일간신문에 도심재개발 문제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소필지나 또는 아파트를 짓고 난 자투리 이런 데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문에서는 상당히 완화돼서 앞으로 재개발하는데 좋겠다고 나고 또 어떤 신문에는 보면 거기에 무슨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 때문에 더 규제가 심하게 된다고 이러한 논조가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향후 소필지 단위로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내년에 법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일단 언론에서는 일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저희들도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신문에서 2건 정도를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문에서 발표된 사안을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부분이 좀 완

화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억제하는 쪽으로 보도된 신문도 봤습니다마는 아직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억제하는 쪽이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특히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짓지 못하도록 지금 지구단위계획지침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워낙 주민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일부 지침을 좀 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가능한 한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침이 현재까지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법 규정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법 규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조례나 지침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향후에 적용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李憲九委員 저도 후자편이 아니겠느냐 예상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3월 27일날 누하동 주민을 모시고 鄭鎭皓 도시계획과장님과 같이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4월 27일날 오후 3시에 효자동 회의실에서 또 주민들과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주나 또는 토지주만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좀 구체적으로 개발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정해서 얘기해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 아무튼 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安載弘委員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있으면 거기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지금 저기 저

그림을 봐도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한 것 뿐인데 정말 걱정스러운 건데 이것도 우리 河局長님이 재입하는 동안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요즘 뭐라고 그럴까요 “아름다운 종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河徹昇局長!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진구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4分 會議中止)

(11時56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조례안 2건이 모두 재무국 소관 사항으

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3.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金福同**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안녕하세요? 財務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福同委員長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자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전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세율이 0.3%인 바 이를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구세감면조례의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2월 전면개정시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60㎡이하 임대주택까지 축소하였으나 최근 전세가격의 폭등이 서민생활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종전의 감면 범위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2001

년 2월 28일에 공포되어 시행중인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은 종합토지세의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아직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임대사업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감면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다 많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하게 되어 그만큼 서민들이 전·월세를 용이하게 얻을 기회가 많아지리라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며, 본 감면조례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4월 6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토세를 감면하여 공급을 확대 유도함으로써 시중의 전세 대란 움직임에 대처코자 하는 정부의 물가대책 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 범위를 종전 60㎡에서 85㎡로 감면대상 면적을 확대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유발하게 된 물가대책장관회의는 2001년 1월 31일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경제관련 장관들이 참석해서 내용은 전세값 폭등에 따른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확대 대책을 강구하고 여기에서 감면폭을 확대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거래질서의 확립 등 기타 전세값 폭등에 따른 종합대책을 논의한 바 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 개정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98년도 1월 1일자로 대상면적을 85㎡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 11월 21일자로 행자부에서 개정권고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1년 2월 5일자로 조례 개정을 해서 종전 85㎡ 감면대상 면적을 60㎡로 감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행자부에서 60㎡를 다시 85㎡로 환원하도록 금번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종전 개정된 사안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적용돼서 혼선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이 4월 6일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구 조례상 감면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여기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갑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고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3/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 세율과 과세 방법 등 관계규정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방법은 현행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라고 해서 전국의 모든 주거용 토지는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방법이고 별도 합산 방법은 전국의 모든 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별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공장이나, 전답, 임야 기타 별장, 고급 오락장의 토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표액에 따라서 세율은 상당히 공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면할 경우에는 조례 제정할 경우에는 행자부 허가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항은 2001년 2월 5일자로 행자부 세제 13400-242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세감면조례는 지난 2월 5일자로 행자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시책에 따라 감면폭을 축소 개정하였으나 2001년

1월 31일자 개최된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축소는 임대주택의 공급감소로 이어져 전세 대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환원하도록 결정되어 그동안 행자부와 감면범위를 절충하여 재산세는 제외하고 종토세만 종전대로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절충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감면폭 확대로 우리 구의 경우 약 110여 건에 723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거나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관련된 국가시책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董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계속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자면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의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의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징구하는 금전으로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각 자치구간에 심한 가격 격차로 인한 민원과 업체로부터 시정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입찰업무에 대한 원가분석결과 1건당 6,248원이 상정된 것을 토대로 1건당 5,000원으로 균등하게 조정토록 조정권고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1건당 1,000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자치구별 수수료 징수 실태를 보고드리자면 현재 550원에서 30,000원까지 다양하게 징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구가 서울시의 권고안대로 5,000원으로 균등 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00년 12월 30일자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5,000원을 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입찰등록수수료를 5,0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2000년도 2,948만원보다 1억 1,792만원이 늘어난

1억 4,740만원의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요율의 현실화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4월 6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입찰참가 신청수수료가 각 자치구별로 550원부터 3만원까지 심한 불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언론 비판 등이 비등하고 또 일부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과 같이 개정을 유발하게 된 요인은 자치구간의 징수수수료 불균형 사항과 두번째로는 수수료액의 비현실화, 원가에 미달하는 사항 그 다음에 입찰제도의 변경 시행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든가 원가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적격자심사 낙찰제와 소액공사 입찰제 이 두 가지 제도 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구별로 수수료 불균형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550원을 받는 구가 중구를 포함해서 5개 구, 그 다음에 1,000원을 받는 구가 우리 종로구를 포함해서 5개 구, 또 1만원 이상 받는 구가 2개 구인데 도봉구가 2만원, 금천구가 3만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민원 발생은 대한매일 등 2개 신문과 청와대 E-메일 등에 다소의 진정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의 원가 산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원가 산출 결과는 서울시에서 2000년 4월 1일자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원가액이 6,248원이 나왔습니다. 이 원가액은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제도의 변경 시행입니다. 첫번째 낙찰자 적격심사제는 2000년 5월 29일자로 행자부 예규가 시행되는 사항으로 내용은 저가낙찰제 시행으로 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가 입찰자 순으로 회사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시공실적 등 시공능력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해서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액공사 입찰제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 9월 6일자로 서울시 예규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대상공사는 일반공사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내용으로 이 제도의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도 가능한 공사이지만 부조리 소지 제거 차원에서 입찰제를 실시하도록 권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내용은 입찰참가 신청 현황이 '99년도에는 68건이고 2000년도에는 134건입니다. 수수료는 '99년도에는 1,625만원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2,948만원으로 55%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기관의 개정 현황은 서울시는 2001년 4월 14일자로 개정을 해서 수수료를 5,000원을 받고 있고 기타 17개 구에서도 5,000원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8년 5월 1일자로 550원으로 정해서 2000년까지 쪽 받아오다가 2000년 1월 12일자로 1,000원으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에는 전문 8조와 별표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6종의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수료는 일반 조세와는 달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원가 계산에 의한 수수료 현실화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吳弼根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우리 董連浩 局長께서는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하는 아주 유능한 국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제출하셨는데 2001년 1월 4일 5,000원의 예가를 정해놓고 3개월 이상 징수조례(안)을 늦게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000원의 수수료징수조례 인상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권고안이 시달된 시기가 1월 초였고 그 권고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입찰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는 없었고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吳弼根委員 서울시도 1월 14일 개정했던 것으로 나와있는데

○財務局長 董連浩 서울시가 먼저 개정을 하고 나서 개정된 내용을 각 자치구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吳弼根委員 그리고 현재는 얼마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蔣昭秀 專門委員께서는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검토의견에는 수수료는 일반 조세와는 달리 수익자 부담원칙이 철저히 적

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원가 계산에 의한 수수료 현실화는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다른 구에는 550원 내지 3만원까지 심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서울시가 조사한 원가 항목별 처리비용으로 제시한 6,248원 이상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산정된 원가액이 6,248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도 5,0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한 바 있고 지금 대부분의 구에서도 5,000원으로 개정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입찰수수료의 경우는 저희 구만 특별하게 무슨 비용이 더 든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吳弼根委員 3만원까지 받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렇기 때문에 3만원까지 받고 있는 구도 전부다 5,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각 자치구가 권고한 안대로 5,000원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를 이미 개정했거나 개정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별도로 6,248원의 원가를 적용해서 수수료를 지금 저희 구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5,000원보다 높게 징수를 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弼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承台 前 議長님!

○洪承台委員 수수료 5,000원 외에 2,000만원 이상은 입찰보증금을 또 받고 있죠? 입찰할 때

○財務課長 趙秀完 예.

○洪承台委員 그러면 5,000원이 맞다는 얘기죠. 10%로 받죠?

○財務課長 趙秀完 에.

○洪承台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또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에, 李憲九委員님!

○李憲九委員 李憲九委員입니다. 吳弼根委員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다가 중도에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입찰이라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데 나는 5,000원이 적다고 봐요. 적어도 입찰을 하면 몇천만원 몇억 낙찰을 하는데 여지껏 수수료 1,000원을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더구나 원가 조사한 것이 6,248원이라고 봤을 때는 최소한 관공서가 무슨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히 입찰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5,000원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1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1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 5,000원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권고를 하고 또 다른 데에도 내릴 예상입니다 그런 다른 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종로구가 앞장서가려면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저는 건당 1만원씩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하나 이것이 조금 그렇다면 여기 보면 5,000원부터 1만원대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1만원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李憲九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재무국장이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제 입장이 입찰에 참가하는 업자들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자로 결정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5,000원이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마는 한 개의 사업에 적어도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수백명의 입찰자가 참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응찰을 했다가 낙찰이 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

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유의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타구의 5개 내지 6개 구에서 5,000원 이상의 입찰수수료를 결정한 구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3일 전에 제가 시청에 회의를 다녀왔었는데 그렇게 인상한 구에서도 추가로 5,000원대로 조정할 것을 별도로 서울시로부터 권유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왔고 이게 조금 전에 吳弼根委員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종로구에 참가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용역을 더 많이 받는 입장이 아니고 서울시나 나머지 25개 자치구의 참여한 입찰 참가자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를 포함한 나머지 자치구와 균등하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는 게 옳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李憲九委員 서울시에서 그렇게 권고할 게 아니라 아예 5,000원으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에 전부 시달해버리지 굳이 이렇게 해놓고서 이것을 조례로 하게끔 만드느냐는 거예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수수료징수조례는 구조례입니다. 구조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의 권고도 있었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구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는 권한은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 또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李憲九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봐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같은 데는 자체재원이 넘쳐흘러 가지고 자립도가 높은 데도 1만원씩 하는데 우리 종로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건당 1만원씩 했으면, 아까 응찰해서 낙찰된 사람은 좋지만 만약에 낙찰이 안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상 돈 1만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돈 1만원의 가치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입찰하는 회사나 입찰하는 개인이라도 신청수수료 돈 1만원 여기서 신청해 가지고 떨어졌다고 해서 분해 가지고 되돌아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수입도 올려야 되겠지만 단가가 5,000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원가도 6,248원이 나왔으니까 돈 1만원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제가 들었고 질의를 마치면서 다음 토론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건당 1만원으로

○委員長 金福同 李憲九委員님께서 말씀은 우리 조례에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만원으로 올리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방금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1만원으로 입찰수수료를 올리자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동감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구의 세수가 빈약한 것도 있고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다른 구를 볼 때 550원, 650원, 1,000원, 5,000원, 1만원 했는데 왜 우리 구는 유난히 1,000원으로 낮춰받았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 당시에 1,000원의 입찰참가 수수료가 타구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초에 개정할 당시에도 1,000원이라는 수수료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다른 구와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국장님은 다른 구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치구별 수수료 현황을 참조할 때 아주 낮은 수수료를 받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가격이 몇 천만원 몇 억 공사를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수수료 1만원을 냈다고 해서 그 양반이 잘못되었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국장님 말씀이 한 건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여러 사람이 응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 사람이 아마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한번이라도 낙찰을 받은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응찰자가 숫자가 다름니다라는 어떤 경우에는 열 명 미만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팔구백 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응찰하는 사람이 평균 한 사람 이상은 낙찰되었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종로구의 제반 공사를 낙찰자가 지금 말하자면 원 낙찰자가 자기가 낙찰을 받아 가지고 브로커 식으로 하청을 주는 식이 되어서 이 공사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현행 규정상 1회에 한해서는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무슨 덤핑에 의해서 불법으로 그것을 하청을 줘 가지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丁炳煥委員 규정상에 1회에 한해서는 하청을 줄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단 1회에 한해서는 낙찰뿐만 아니라 낙찰 또 낙찰 하도급 몇 번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라는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불법하게 하도급을 주는 그런 사례들을 철저하게 현장 지도와 업체 지도 감독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아마 그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부실공사가 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3,000만원 이상만 지금 입찰에 응한다고 했는데 3,000만원 이하는 수수료가 안 붙습니

까?

○**財務局長 董連浩** 이것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수수료징수조례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여하는 수수료입니다. 3,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입찰참가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丁炳煥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安載弘 幹事님!

○**安載弘委員** 돈을 징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5개 구가 5,000원에서 1만원을 받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가 얼마 받으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양천구가 2000년 1월달에 개정된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1억원 미만의 경우는 5,000원 1억원 이상의 경우는 1만원을 받도록 수수료징수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후 작년 1월달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별도의 개정의 절차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권고한 안대로 5,000원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관악구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관악구는 이곳도 양천구와 마찬가지로 2000년 1월달에 개정된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1만원을 징수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5,000원으로 인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는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5,000원 이상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구에 대해서 5,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吳弼根委員님이나 李憲九委員님이 원가에 대해서 언급한 기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국장께서 답변하는 중에 수수료징수조례가 구조레라면 물론 서울시에서 권고를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레벨이면 좋겠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25개 구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A라는 구청에 갔더니 3,000원이고 B라는 구청에 갔더니 5,000원이고 다른 구에 갔더니 1만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응찰하는 사람들이 남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을 갔더니 1만원 받고 종로구는 1,000원밖에 안 받는다. 응찰자 입장에서는 혼란하니까 시 입장에서는 통일되면 좋겠다는 권고안이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취지는 수수료징수조례는 어차피 구조레니까 여기에 산출근거에도 6,248원이라는 원가의 개념이 있으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6,000원 정도나 1만원 정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7급 10호봉 9년차라고 이렇게 인건비만 해도 5,859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응찰자 나름대로의 애로는 있겠지만 종로구의 입장에서 시의 권고안도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원가에 대한 논의도 받아들여서 그 정도에서 절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5,000원보다 원가에 맞춰서 약간 상향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타구에서 수수료를 5,000원으로 대부분 정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구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서 타구에 비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와의 형평을 유지해서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야기되는 민원을 방지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국장님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안 인가봐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세수가 증대된다면 의회에서야

○財務局長 董連浩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제안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원가 계산에 의하면 6,248원이라는 원가 계산이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찌된 너무 당연한 위원님들의 제안이고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구와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의 입장임을 감안하셨으면 고맙겠고 또 수수료징수조례는 한번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일단 적용을 하다가 어떤 여건이 변동되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행부 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사안에 비춰서 향후에 조정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하는 저희 집행부 의견을 드립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서울시 전체 몇 개 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이미 개정이 완료된 구가 대부분이고 저희 구처럼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 추진 중인 구가 칠팔 개 구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사실 어떤 면에서 종전의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면 500% 인상하는 건데요 사실 응찰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일 것입니다. 종로구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따르다보니까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된 것을 위원님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시 징수조례개정조례(안) 주셨고 제안설명서만 주셨다고요 다른 건은 받은 게 없는데

○財務局長 董連浩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원가산출 규정까지 별도로

○安載弘委員 그러면 토론시간에 李憲九委員님

께서 말씀을 하신다니까 일단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 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憲九委員님!

○李憲九委員 국장님! 혹시 5,000원이 안되면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왜 5,000원으로 해놨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李憲九委員 아니 됐어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財務局長 董連浩 일단 5,000원으로 의결을 해주시고 향후에 여건이 바뀌어서 조정할 계체가 생겼을 때는 그때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변동을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委員長 金福同 더 질의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7分 會議中止)

(12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福同 회의를 속개합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본 委員長이 幹事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4일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鐘路區議會 臨時會 第1次 財務建設委員會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42分 散會)

○出席委員 9人

金福同 安載弘 吳弼根 洪承台
李憲九 吳錦南 丁炳煥 朴鍾植
李炯述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財務局長 董連浩